##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 발의연월일: 2024. 5. 30.

발 의 자:소병훈·안태준·송석준

정성호 · 박 정 · 송옥주

윤종군 • 윤후덕 • 김태년

김병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·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, 권역별로 총량규제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·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음.

이에 자연보전권역 중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지역,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,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'정비발전지구'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

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연보전권역 중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지역, 성장촉진지역,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 가 필요한 지역,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그 인접지역을 정비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2 신설).
- 나.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(안 제20조의3 신설).
- 다.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행위 제한,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·승인, 과밀부담금의 부과·징수, 총량규제 등 현행법에 따른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20조의4 신설).
- 라.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(안 제20조의5 신설).
- 마.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의 관할 시·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,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

등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6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"정비발전지구"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, 균형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0조의 2에 따라 지정·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8호) 중 "제7호"를 "제8호"로 한다.

8. 정비발전지구에 관한 사항

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수도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대상 지구가 둘 이상의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자연보전권역 중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제8조의3

-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지역
- 2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
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- 4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이 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인접지 역
- ② 시·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서, 정비발전계획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 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·도지사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

시하고,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⑥ 지정된 정비발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의3(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) ①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· 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(이하 "정비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1.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
  - 2. 정비발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
  - 3.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
  - 4.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 - 5.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정비발전지구가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정비 발전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. 다만, 관할 시·도지사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발전계

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발전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승인받은 정비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발전계획의 수립·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의4(정비발전지구 규제 특례 등) ①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 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1.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권역별 행위 제한
  - 2.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 과의 협의·승인
  - 3.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부과·징수
  - 4.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
  - 5. 제19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

- 6.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
- 7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·증설, 이전, 업종 변경 등의 제한
- 8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행위 제하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수립 하여야 하며,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지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0조의5(개발이익의 재투자) ①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 시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  - 1. 해당 정비발전지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 공·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
  - 2. 해당 정비발전지구 내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

- 3. 해당 정비발전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·공급하는 사업에 드 는 비용의 부담
- ②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.
- 제20조의6(정비발전지구의 지정 해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 - 1. 관할 시 · 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
  - 2.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
  - 3. 정비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  - ② 정비발전계획에 따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

제20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.

제21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
- 9. 정비발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연번 13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번	근거 법률	지역・지구등의 명칭	
139의	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0조의2	정비발전지구	
2		_ , ,	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"정비발전지구"란 수도권의
	경쟁력 강화, 균형 발전 및
	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
	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
	지역으로서 제20조의2에 따라
	지정・고시되는 지역을 말한
	<u>다.</u>
제4조(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) ①	제4조(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) ①
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	
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	
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	
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	
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	
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	
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	
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	
한다.	<u>.</u>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8. 정비발전지구에 관한 사항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	9제8호

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<u>9.</u>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<신 설>

\_\_\_\_\_

-----

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수도권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비발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대상 지구가 둘 이상의 시·도 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1. 자연보전권역 중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・시행하는 지역
- 2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
- 3.
  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
   한 법률」
   제36조제1항제1호

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산 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 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- 4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 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인접지역
- ② 시·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관계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서, 정비발전계획안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발전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은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발전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,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·도지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통지를 받은 시·도지사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, 14 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지정된 정비발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.
- 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발전지 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의3(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) ①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 는 시·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

<신 설>

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(이하 "정비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1.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
- 2. 정비발전지구의 명칭·위치및 면적
- 3.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
- 4.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 달에 관한 사항
- 5.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의 종 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정비발전지구가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정 비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 하여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. 다만, 관할 시· 도지사가 협의를 하였으나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

교통부장관이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발전 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일간신문과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.
- ⑤ 승인받은 정비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 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다 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발전계 획의 수립·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의4(정비발전지구 규제 특례 등) ① 정비발전지구에서는

<신 설>

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.

- 1.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권역별 행위 제한
- 2.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 통부장관과의 협의·승인
- 3.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<u>부과·징수</u>
- 4.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
- 5. 제19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
- 6.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
- 7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 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·증 설, 이전, 업종 변경 등의 제 한
- 8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행위 제한
- ②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

   수・구청장은
   제20조의2제5항

<신 설>

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로 고시 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,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 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등 관계 법령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0조의5(개발이익의 재투자) ①
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- 1. 해당 정비발전지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 장 및 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
- 2. 해당 정비발전지구 내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
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가격 인하

- 3. 해당 정비발전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·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
- ②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 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 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「개발이익환 수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.

제20조의6(정비발전지구의 지정 해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 정된 정비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관할 시·도지사가 정비발전

<u><신 설></u>

- 지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
- 2.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
- 3. 정비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 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아니 한 경우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 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정비발전계획에 따른 정비 발전지구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 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 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 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20조의2제5항을 준 용한다.
-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  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제21조(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제21조(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생략)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.
  - 1. ~ 7. (생 략)

<u>&lt;신 설&gt;</u>	8.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과 지정
	해제에 관한 사항
<u>&lt;신 설&gt;</u>	9. 정비발전계획의 수립과 변경
	에 관한 사항
<u>8.</u> (생 략)	<u>10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